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30(목)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67호

나. 제 출 자 : 조윤형의원(대표발의), 김경완의원, 윤영희의원, 강수정의원

다. 제출일자 : 2021. 12. 23.

라. 회부일자 : 2021. 12. 2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므로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공무원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공무원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의 확립, 친절과 공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라.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2. 23. ~ 12. 28.(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 취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되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반영,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원의 임면·복무 등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조례안 구성은 모두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안 제2조 및 별표 1에 공무원의 취임에 따른 복무선서의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별표에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의 확립, 친절과 공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 하고, 병가,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 의회의장으로 변경되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의 확립, 친절과 공정, 연가・공가・특별휴가 등 복무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사항임.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1】

관 련 법 령

□ 「지방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지<u>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3. 21.,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7. 7. 26., 2018. 3. 20.>

-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21. 6. 8.>
-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u>제2조의6(위임규정)</u>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28.]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7(특별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